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(「의료법」 제21조)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.

「의료법」
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**의료인**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**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**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

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**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**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.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.

*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(「의료법」 제63조제1항),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·폐쇄 명령 대상(「의료법」 제64조제1항)

3.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각 협회는 '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'(붙임)을 참고하여 동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대한요양병원협회, 대한한방병원협회, 대한치과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

주무관 **이기영** 행정사무관 **박종용** 의료기관정책과 전결 2023. 7. 18.
장 **박미라**

협조자

시행 의료기관정책과-4960 (2023. 7. 1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4층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76 팩스번호 044-202-3926 / leegy118@korea.kr / 비공개(5)